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89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박성훈 · 서일준 · 송언석  
김은혜 · 김성원 · 조은희  
김정재 · 임이자 · 박수영  
조지연 · 이양수 · 김장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

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예술인”이란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이라 한다)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

제6조제1항제4호 중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를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를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문화전문인력의”를 각각 “지역문화예술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을 “지역문화예술인등을”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기관(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를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에”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를 “지역 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의”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역문화전문인력의”를 “지역문화예술인등의”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5 중 “지역의 문화예술인의”를 “지역예술인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지역예술인”이란 지역문화</u> <u>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u> <u>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u> <u>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u> <u>술인을 말한다.</u></p>
<p>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u> <u>술인(이하 “지역문화예술인</u> <u>등”이라 한다)의 양성 및 지</u> <u>역정착 활성화</u></p>
<p>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p>	<p>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p>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5. ~ 10. (생략)
- ② ~ ⑥ (생략)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2. (생략)
-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 6. (생략)
- ③ ~ ⑥ (생략)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 5. ~ 10.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 3.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 4. ~ 6.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역문화예술인들의 양성)

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생략)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4. ~ 10. (생략)

② -----지역문화예술인등-----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기관(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이라 한다)-----

③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에-----

④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의-----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2. (현행과 같음)
- 3. -----지역문화예술인등의-----
- 4. ~ 10. (현행과 같음)

